

사) 대한안경사협회 정관변경(안) 신규대비표 - (초안 결정)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명칭, 목적,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은 정관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법률적 강제조항이지만 지금까지 몇 번의 정관변경이 있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등기를 같이 하고자 함. ※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를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즉 설립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없이 법인이 성립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밖의 법인등기(예, 사무소이전등기,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등)없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제3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54조 제1항). ※ 정관 및 제규정 모두 ‘중앙회’를 ‘협회’로 변경합니다.		
제1조(명칭)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이하 “<u>중앙회</u>”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약칭 K.O.A)라 칭한다.	제1조(명칭) <u>이 법인은</u>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이하 “<u>협회</u>”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약칭 K.O.A)라 칭한다.	제1조(명칭) 제1조 대한안경사협회를 약칭 “중앙회”라 칭하고 있으나, “중앙회”라 명칭하면 지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처럼 느껴지며, “협회, 본회, 법인,”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협회, 본회, 법인,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제3조(목적) 중앙회는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경광학에 관한 교육 실시, 학술 연구,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 판매와 안경광학에 관한 연구 개선발전을 도모하며 안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u>협회는</u>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보호에 이바지하<u>고자 하며</u>, 안경광학에 관한 교육 실시, 학술 연구,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 판매와 안경광학에 관한 연구 개선발전을 도모하<u>고</u>, 안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 확립 <u>및 사회복지</u>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사회복지”라는 자구는 비영리법인이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약사회,”등도 ‘사회복지’를 목적 맨 앞에 놓습니다. 그렇다고 의협이나 약사회가 공익법인도 아니며 그들도 우리처럼 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제4조(조직) 중앙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사무소(이하 “지부”라 칭한다.)를 두고 지부에는 시, 군, 구(서울특별시, 광역시)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는 당해 시·도 안경사회, 분회는 시, 군, 구 안경사회라	제4조(조직) <u>①협회</u>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u>및</u> 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 광역시<u>에 한한다.</u>)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는 당해 시·도 안경사회, 분회는 시·군·구 안경사회	제4조(조직) 제1항 협회에도 장학회를 비롯하여 평생교육원 및 품질인증이나 각종학회 또는 여러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칭할 수 있다. 단, 지부에서 분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 <신설> 제6조(사업) 중양회는 제3조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시력보호에 관한 사항 2.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안경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취업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안경사 <u>윤리의 창달과 안경사 권익신장</u> <u> </u>에 관한 사항 6. <u>회원교육</u> <u> </u>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및 협조 요청한 사항 7. 안경광학 발전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기관지, 학술지, <u> </u> 발간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9. 안경광학의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지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u> </u> 사회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11-1. 전시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라 칭하며, 필요에 따라 협회에는 산하단체를 둘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분회는 회원 수에 따라 광역으로 묶어 설치 또는 통폐합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u> </u>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안경사의 윤리와 <u> </u> 권익신장 및 취업에 관한 사항 6. <u>안경사</u>교육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 및 협조 요청한 사항 8. 기관지, 학술지, 정기간행물 발간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11. <u>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u> 사회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전시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2항 분회를 신설 하거나 통폐합 할 때 협회 또는 지부의 제안으로 하되, 관련지부의 의견을 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6조(사업) 제4호의 '취업'은 제5호로 이동하고, 삭제 제5호 '창달'은 삭제, 안경사의 '취업'을 삽입. 창달의 뜻 : 거침없이 쑥쑥 뻗어 나감 제6호 법정보수교육의 수강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안경사라면 모두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교육"을 "안경사교육"으로 변경합니다, 제8호 인터넷신문발간에 따른 선 허가 후 정관 변경 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된 사항이라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변경 합니다. 제11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앙회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②회원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령,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매년 당해년도 3월까지 회원신상신고를 필해야 하며 <u>신상변동 시 수시로 분회 또는 지부를 통하여 회원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u> ④회원은 연회비, 기타특별회비를 중앙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회 및 지부를 경유,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안경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중앙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회원의 신상신고 및 연회비, 기타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부담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③회원은 매년 당해년도 3월까지 회원신상신고를 필해야 하며, <u>개인정보</u> 변동 시 <u>소속지부</u> 또는 <u>홈페이지</u> 를 통하여 <u>직접 변경</u> 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제3항 개인정보변동 때는 홈페이지나 소속지부를 통해 본인이 직접변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명예안경사) ①명예안경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안경사가 될 수 있다. 1. 국내외 안경사, <u> </u> <u>검안사</u> 로서 <u>중앙회</u>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중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저명인사로,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 ②명예안경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10조(명예안경사) 1. 국내외 안경 <u>업무와 관련된 자</u> 로서 <u>협회</u>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②명예안경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 <u>하며, 제1항의</u>	제10조(명예안경사) 제1호 '검안사'를 ⇒ '안경업무와 관련된 자'로 변경 제2항 명예안경사는 정회원이 아니라서 명예안경사로서 자격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10명은 득표순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단 협의에 의하여 직능별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상임이사는 중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⑥ 임원은 각 시도지부의 임원(지부장 제외)을 겸임할 수 없다. 단,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u>조건을 상실하였을 때는 이사회 의결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u>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_____ 이사는 <u>회장단 및 지부</u>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u><삭제></u> ③ _____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_____ 회장은 <u>협회</u>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⑥ <u><삭제></u>	이후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상임이사회논의로 명예안경사의 지휘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제1항 선출직(회장, 감사)은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이사는 협회회장단과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 합니다. 제2항 임원을 선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관련법규 변경으로 삭제합니다. 제3항 '제1항의'를 삭제 제14조(임원의 직무) 제6항 시도지부의 임원들도 협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14조 2(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중앙회 및 지부의 회계와 회무집행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u>는 이사회소집 또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u> ④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총회 운영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감사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4조 2(감사의 직무) ③감사는 제2항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u>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14조 2(감사의 직무) 제3항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시정할 것을 주문하고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주무관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주어집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중앙회의 징계처분(경고, 견책, 공권정지, 공직박탈, 자격정지)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호 현행“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민법<제10429호, 2011.3.7.>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에서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illegible]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무부정이 없는 한 불신임안 등을 제출할 수 없다. ⑫ <신설> 제20조(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 및 의결) ①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_____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무부정이 있을 시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⑫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 및 의결) ①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회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3항에서 옮겨 옴] ②대의원의 의결권은 협회에 등록된 명부와 원본대조 및 원본위임장을 서면으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출석이 성립되고, 위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참석대의원의 결정으로 하되, 송부된 총회안건 외에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원선출 및 해임, 정관변경, 법인해산, 등은 위임할 수 없다. ③총회의 의사는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회무부정이 있을 때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항 총회의 의사진행 방법 등은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 및 의결) 제1항 총회 회의 자료는 최소한 10일 전에는 대의원들에게 송부되어야 위임장 작성 등을 하여 총회 개최 3일전에는 의장에게 보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항 현행 3항을 제2항으로 항 변경하고, 정관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제53조1항과 조문이 겹쳐 삭제합니다. ※대의원의 총회의결권은 대의원명부와 대조하여 성립되어지며, 위임역시 3일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의안건 외에는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회의안건이라 할지라도 임원선출 및 해임, 정관변경,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아예 없애는 것은 민법에서 정한 대의원의 결의권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를 적용한다.(민법제73조)" 제3항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항을 변경하고 정관의 각 조문마다 별도의 의결주문이 있음으로 그 의결주문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u>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u> 제24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상임이사, 이사,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회의로 구분하며, 감사는 의견진술권만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이사회는 소집은 이사회 개최 3일전에 회의자료 첨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신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의장과 상임이사가 기명날인한다. ⑥ <u><신설></u>	<u>_____.</u> 제24조(이사회) <u>⑥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u>	원 과반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협회는 대의원총회의결을 출석대의원과 과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장도 당연직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다시 복수의 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다수결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원칙입니다. 제24조(이사회) 제6항 이사회는 투표결과보다 토론과정이 중시되므로 이사 자신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24조의2(서면결의 금지) <신설>	제24조의2(서면결의 금지) <u>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u>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2. <u>제1호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u>	여 권한을 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82.07.13. 선고 80다2441 판결) 제24조의2(서면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경미하면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허용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 됨으로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복지부업무편람의 비영리사단법인정관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의3(이사아닌자의 출석) <신설>	제24조의3(이사아닌자의 출석) <u>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문, 자문위, 산하단체장, 또는 상담역외 기타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를 출석요구하거나 허락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사회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 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u>	제24조의3(이사아닌자의 출석) 이사회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입니다.(민법58조) 따라서 이사아닌자가 이사회로부터 출석요구나 허락을 받았을 때에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의 논의나 회의내용이 외부로 누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회의와 관계없는 자가 회의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회의 출석요구로 고문, 자문위원, 지부관계자의 의견이나 상담역 또는 기타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로부터 그 내용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만 이사회가 출석요구하거나 수락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7. 부회장·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8. 지부 운영규정 인준 및 운영 <u> </u>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연회비, 기타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 학술지 <u> </u> 및 기타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3. <u><신설></u>	제25조(이사회 <u> </u> 의결사항) 8. 지부 운영규정인준 및 운영<u>전반에</u> 관한 지도감독 <u>할</u> 사항 10. 기관지, 학술지, <u>정기간행물</u> 및 기타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u>13.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u>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제8호 자구변경. 제10호 인터넷신문발간에 따른 선 허가 후 정관변경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정기간행물을 추가 합니다. 제13호 정관 각 조에서 ‘이사회결의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었다면, 이 조항에 있는 조문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26조(상임이사회) ①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감사는 의견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장이 되고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3인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④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하며, 회장단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가	제26조(상임이사회) ④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하며, 회장단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가	제26조(상임이사회) 제4항 상임이사의 주요업무를 부회장의 직능별로 전담하고 논의하여 업무를 분담해서 집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되며, 상임이사회 업무는 총무, 재무, 기획, 홍보, 국제, 교육, 법제, 사업, 섭외, 윤리, 조사, 관리, 학술, 보건, 정보, 이업종 등으로 구분 한다. ⑤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상임이사회 소집은 상임이사회 개최 3일전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신방법으로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상임이사회는 중앙회의 회무집행을 위한 제반시책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회에게 분담하여 차기 이사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학회 회칙) <u>학회는 중앙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따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u> 제36조(학술대회) <u>중앙회는 안경광학 및 안경을 조제 판매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u> 제37조(장학회) <u>중앙회는 안경광학발전과 산학협동을위하여 장학회를 둘 수 있다.</u>	되며, <u>본회의 중요업무를 전담하고, 업무분담은 총무, 재무, 기획, 홍보, 교육, 사업, 윤리, 법제, 제도, 보건, 복지, 섭외, 학술, 조사, 관리, 정보, 국제, 정책, 연구, 이업종 등으로 구분하여 부회장의 직능별 직속으로 한다.</u> 제34조(학회 운영) <u>학회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u> 제36조(학술대회) <u>협회는 안경사의 자질향상과 안경사 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u> 제37조(복지장학 위원회) <u>협회는 정관이 정한 규정의 목적사업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시력보호와 산학협동을 위하여 복지장학위원회를 둔다.</u>	행합니다. 제34조(학회 운영) 제34조 '학회회칙'을 '학회운영'으로 변경하고, 학회운영은 회칙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별도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6조(학술대회) 일부 자구변경. 제37조(장학회) 안경사의 위상과 협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학사업 및 봉사활동의 필요성은 두세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또, 국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38조(장학회 회칙) 장학회는 중앙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따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신설>	제38조(장학회 운영) ①장학회를 운영할 운영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 이사회논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민으로부터 소득이 창출되는 안경사는 수입의 일부분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제38조(장학회 운영) 제38조 '회칙' ⇒ '운영'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을 상임이사회 논의로 회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장학회운영은 협회 제규정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하면 될 것이지, 회칙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봅니다. 하여 '회칙을 따로 정한다.'는 규정은 삭제하고, 장학회 운영으로 조문을 변경합니다.
제39조(자산) ①중앙회의 자산은 중앙회 소유 동산, 부동산으로 구분 _____ 법인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기본 자산에 관한 목록 및 _____ 관계문서를 구비 _____ 보관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_____ 매수, 기부금 등 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_____ 법인자산에 편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자산) ①협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하여 법인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기본 자산에 관한 목록과 평가액을 작성한 관계문서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자산을 출자, 매수, 기부 및 기타 방법으로 _____ 취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결의로 법인자산에 편입 _____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산) ● 종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칙 개정으로 기본재산목록이 붙은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제1항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 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 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에 보고 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2항 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은 기본자산 이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업무편람"을 보면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명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③ <u>중앙회의 경비</u>는 회원의 연회비, 기타특별회비 _____ 및 기타 수입금으로 <u>충당</u>한다. ④ 중앙회는 제증명을 발행하였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u>중앙회(지부, 분회포함) 모든 임원은 협회자산의 보존수익의 의무를 갖는다.</u> ⑥ <u>중앙회(지부, 분회포함) 모든 임원이 중앙회 자산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u>	③ <u>협회의 수입</u>은 회원의 연회비, 기타특별회비, <u>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u> 및 기타 수입금으로 _____ 한다. ⑤ <u>협회(지부, 분회포함)의 모든 임원은 협회자산의 보존수입 의무를 갖으며,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u> ⑥ <u>기본자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으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자산을 이사회에서 법인 명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제3항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재단법인일 경우엔 기본적으로 기본자산을 등기하여야 하지만, 사단법인일 경우엔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만 정관에 명시되어있으면 법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항 현행의 보존수익은 이미 얻어진 수익을 보존한다는 의미로서 제6항의 자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와 동일한 어휘를 갖고 있음으로 제5항의 현행에서 '보존'을 '보전'으로 변경하면서 제6항의 자산의 손실을 제5항으로 이동하여 함께 명시합니다. 제6항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 정관에 기본재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정관에 명문화 하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과 자산 : 재산이란 개인, 단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말하며, 자산이란 현금, 상품, 건물, 비품, 무형자산, 부채 등과같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41조(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u>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_____ 할 수 있다. _____. ③ 중앙회의 재정은 공공금융기관 이외의 예탁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 예산회계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기본자산의 처분) <u>중앙회의 자산을 양도, 교환, 증여, 담보 또는 _____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_____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제41조(회계) ② <u>협회</u>는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이사회 결의로</u>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u>운영</u>할 수 있다. <u>다만, 이사회의결은 재적3분의2 출석과 출석3분의2 찬성으로 한다.</u> 제45조(기본자산의 처분) <u>협회</u>의 자산을 양도, 증여, 교환, 담보, <u>의무부담, 권리포기 또는</u> 처분 하고자 할 때는 <u>이사회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u>,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 즉 경제적 자원으로서 취득 시에 객관적으로 화폐가치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자산은 부기나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경영활동이 수반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41조(회계) 제2항 특정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고,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며, 다만, 이사회 3분의2 출석과 가결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뒤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45조(기본자산의 처분) 이 전에는 기본재산 처분 때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 지금은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로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변경 하려면 정관의 별지를 변경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때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일 경우에는 기본재산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총회회의록을 제출하여 정관의 기본재산목록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49조(징계) ① 중앙회는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 운영 및 징계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안경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과 각급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중앙회 및 안경사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중앙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임원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자 5. 회비를 체납하여 지부 또는 분회의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자 6. <u>삭제, <신설></u> 7. 허위사실 유포 및 문서배포 기타의 방법으로 협회나 타 안경사를 비방, 중상, 모략행위를 한 자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된 피징계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u>회원의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제49조(징계) 6. <u>회원의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정도가 심하면 청문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u>	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 목록의 별지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없으며, 단지 법인명의로만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9조(징계) 제6호 제3항 ⇒ 제6호로 이동 제3항 징계는 협회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하며, 말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제50조(기관지 등 발간) 중양회는 제6조 제8호에 규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지, 학술지, <u>기타</u> 간행물을 발행한다. 제57조(중양회 해산) 중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3이상 또는 회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u>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u> 제58조(중양회 해산시 ____재산의 처분) 중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정관변정 2017.2.25.> <신설>	제50조(기관지 등 발간) <u>협회</u>는 제6조 제8호에 규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지, 학술지, <u>정기</u> 간행물을 발행한다. 제57조(법인 해산) <u>이 법인을</u>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3이상 또는 회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산 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_____. 제58조(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u>이 법인</u>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정관개정 2017.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와 지부의 약칭에 관한 적용례) 2017.02.23. 정관개정에 따른 이 법인의 약칭을 중양회에서 협회로, 중양회장을 협회장으로 정관에서 일괄변경 하고, 각 시도지부의 약칭	위한 통제활동으로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50조(기관지 등 발간) 제50조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 협회가 운영하고자 한 인터넷 신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7조(중양회 해산) 제57조 제58조의 청산위원회 구성을 제57조로 이동하여 명시합니다. 제58조(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제58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합니다. 부 칙 <정관변경 2017.2.25.> 부칙은 정관변경의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복지부 업무편람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u>은 지역명을 포함한 안경사회와 지부장(또는 지역명을 포함한 회장)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부칙 제1조 시행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u>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현행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음(민법 제42조 제2항)